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2013 - 13 - 039호 (사건번호 : 201303조사002)

안 건 명 (주)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LG유플러스 (대표이사 이상철)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27번지
대표이사 이상철

의결연월일 2013. 3. 14.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56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거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016만명으로 전체 시장의 18.9%(12.12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3조4,290억원(11.12월말 기준)으로 15.3%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T	LGU ⁺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10,162 (18.9)	
매 출 액 (점유율, %)			3,429 (15.3)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11년 영업보고서)

나.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1)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7)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 관련 조항 >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보조금 지급범위 확대('06.3.27 ~ '08.3.27)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 관련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3회('10년, '11년, '12년)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³⁾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하였고,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하였으며,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동전화 시장 현황

이동전화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는, '12.12.24일 위원회 제재조치 이전('12.12.17~12.24) 평균 3.5만건에서 조사대상 기간('12.12.25~'13.1.7)에 평균 5.6만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신규모집 금지가 시작된 이후('13.1.8~1.15)에는 평균 3만건으로 다시 낮아졌다.

특히, 조사대상 기간을 보면 연말 실적, 성탄절, 신정 연휴 등의 특수로 인하여 최고 8.2만건의 번호이동을 기록하는 등 사업자간 번호이동을 통한 시장과열이 뚜렷하게 발생하였다.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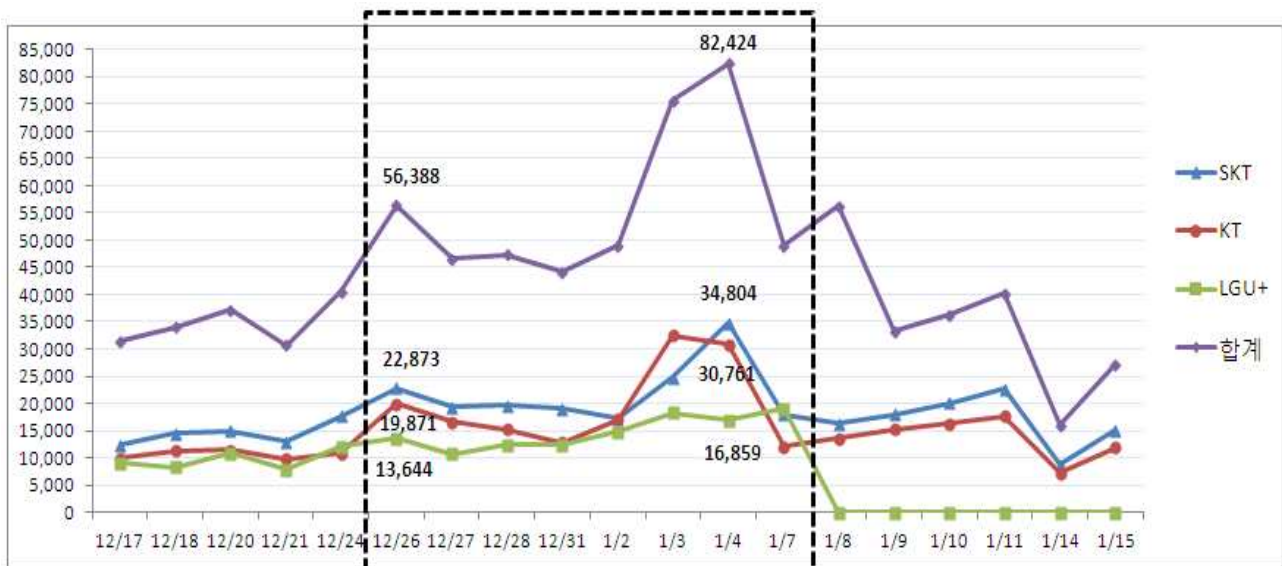
2)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12.12.17~'13.1.15) >

(단위 : 건)

구 분	SKT	KT	LGU+	합계
'12.12.17	12,434	9,939	8,993	31,366
'12.12.18	14,517	11,237	8,312	34,066
'12.12.20	14,883	11,461	10,783	37,127
'12.12.21	12,933	9,849	7,853	30,635
'12.12.24	17,607	10,819	12,067	40,493
'12.12.26	22,873	19,871	13,644	56,388
'12.12.27	19,293	16,582	10,644	46,519
'12.12.28	19,648	15,252	12,363	47,263
'12.12.31	18,967	12,808	12,430	44,205
'13.1.2	17,232	17,065	14,767	49,064
'13.1.3	24,748	32,534	18,329	75,611
'13.1.4	34,804	30,761	16,859	82,424
'13.1.7	17,941	12,050	19,054	49,045
'13.1.8	16,257	13,633	0	29,890
'13.1.9	17,965	15,272	0	33,237
'13.1.10	20,058	16,236	0	36,294
'13.1.11	22,619	17,640	0	40,259
'13.1.14	8,764	7,220	0	15,984
'13.1.15	15,160	11,980	0	27,140



2. 사실조사 결과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13.1.25일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2.12.25 ~ '13.1.7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에 대한 신규·기변 가입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 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편당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연말 목표달성과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이통3사의 신규 모집금지 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다.

(1) 차별적 보조금 책정 (이통사 → 대리점)

피심인은 매월 본사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배포하는데, 정책 내용에는 제조사와의 Co-work⁴⁾ 정책, 이통사 단말기 판매 정책, 소매판매 활성화 정책, 판매 유통 채널별 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리점 등 유통망은 본사 영업정책을 기본으로 단가표를 작성하고 이를 판매점에 배포하여 판매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게 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타 사업자에게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각종 영업정책을 수시로 유통망에 배포하였으며, 기본 영업정책 외에 비하인드·구두정책 등을 메신저, 이메일,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유통망에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지역본부(지점 포함)에서 보내준 각종 영업정책을 토대로 '단가표'를 작성하여 판매점에 배포하고,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의 정보습득 차이에 따라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13년 1월 4일 이후~										Net가 단위: 원					
구 분	애큟	주 력	품 명	출고가	슈퍼세이브 총수수료			72 기준 Net가(30개월기준)			의무약정				
					010	MNP	기변	선한 카드 36개월 할인 금액 포함			010		MNP		약정 보조금
								010	MNP	기변	입금가	R/B	입금가	R/B	
LTE	갤럭시노트2		SHV-E250L	1,089,000	165	297	165	121,440	-10,560	121,440	969	-	969	-	120
	갤럭시노트2 64G		SHV-E250L64	1,155,000	165	297	165	187,440	55,440	187,440	1035	-	1035	-	120
	갤럭시S3		SHV-E210L	994,400	594	638	539	-402,160	-446,160	-347,160	874	-	874	-	120
	갤럭시S3 16G		SHV-E210L16	961,400	594	638	539	-435,160	-479,160	-380,160	841	-	841	-	120
	옵티머스큐2		LG-F200L	966,900	484	528	484	-319,660	-363,660	-319,660	847	-	847	-	120
	옵티머스G		LG-F180L	999,900	539	671	539	-341,660	-473,660	-341,660	880	-	880	-	120
	베가_LTE 2		IM-A830L	913,000	583	583	583	-472,560	-472,560	-472,560	793	-	793	-	120
	갤럭시노트		SHV-E160L	999,900	473	473	418	-275,660	-275,660	-220,660	880	-	880	-	120
	갤럭시노트16G		SHV-E160L16	933,900	473	473	418	-341,660	-341,660	-286,660	814	-	814	-	120
	갤럭시노트 10.1		SHV-E230L	891,000	154	154	99	-65,560	-65,560	-10,560	891	-	891	-	-
	옵티_LTE2		LG-F160L	693,000	429	429	429	-538,560	-538,560	-538,560	573	-	573	-	120
	옵티_큐		LG-F100L	999,900	495	495	440	-297,660	-297,660	-242,660	880	-	880	-	120
	베가R3		IM-A850L	999,900	693	825	693	-495,660	-627,660	-495,660	880	-	880	-	120

4) 제조사가 단말기 리베이트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피쳐폰 · 스마트폰 · LTE폰 등 기종별로 정책이 별도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사별로 지원금액이 다름

[2] 차별적 보조금 지급 (이통사·대리점·판매점 → 이용자)

①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2,198건(번호이동 10,949건, 일반 1,249건)⁵⁾과 기기변경 가입 2,348건 등 총 14,546건을 분석하였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합 계
신 규	1,677	878	1,016	2,606	1,753	1,223	1,148	1,897	12,198
- 번호이동	1,482	754	876	2,305	1,605	1,101	1,018	1,808	10,949
- 일 반	195	124	140	301	148	122	130	89	1,249
기기변경	313	159	260	626	230	163	152	445	2,348
합 계	1,990	1,037	1,276	3,232	1,983	1,386	1,300	2,342	14,546

단, 단말기 구매 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 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실버폰 개통건⁶⁾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사대상 분석 단말기는 총 20개 기종이었다.

② 시기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241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973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24.8%였다.

5)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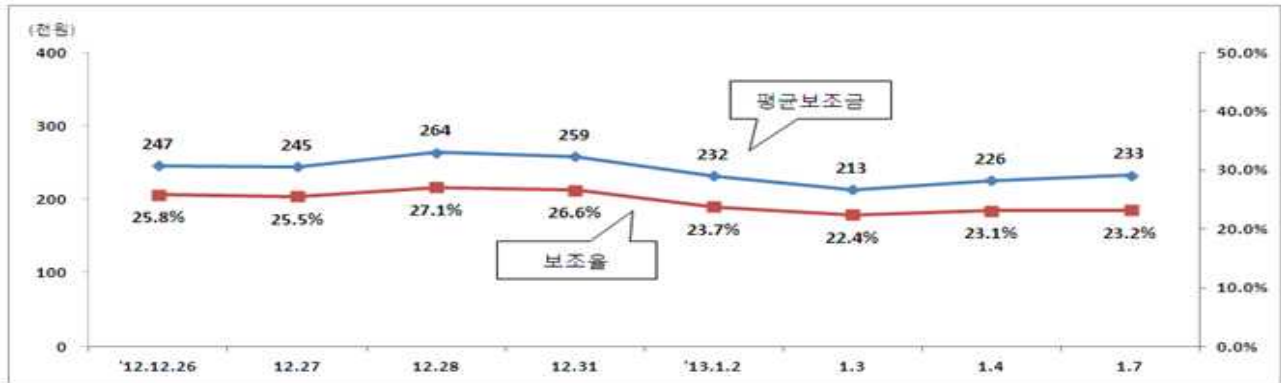
6) 실버폰 및 2G 서비스에 가입한 피쳐폰은 주로 저소득층, 노인, 청소년 등이 사용하고 있으며,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일별) >

(단위 : 천원, %)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평균
출고가	954	960	973	973	979	952	976	1,003	973
보조금	247	245	264	259	232	213	226	233	241
보조율	25.8	25.5	27.1	26.6	23.7	22.4	23.1	23.2	24.8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③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피심인이 이용자를 자사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형태는 크게 신규 가입과 기기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가입의 경우 세부적으로 신규 일반(010)과 번호이동(MNP)로 구분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29천원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05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이가 76천원이었다.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 달리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신규 가입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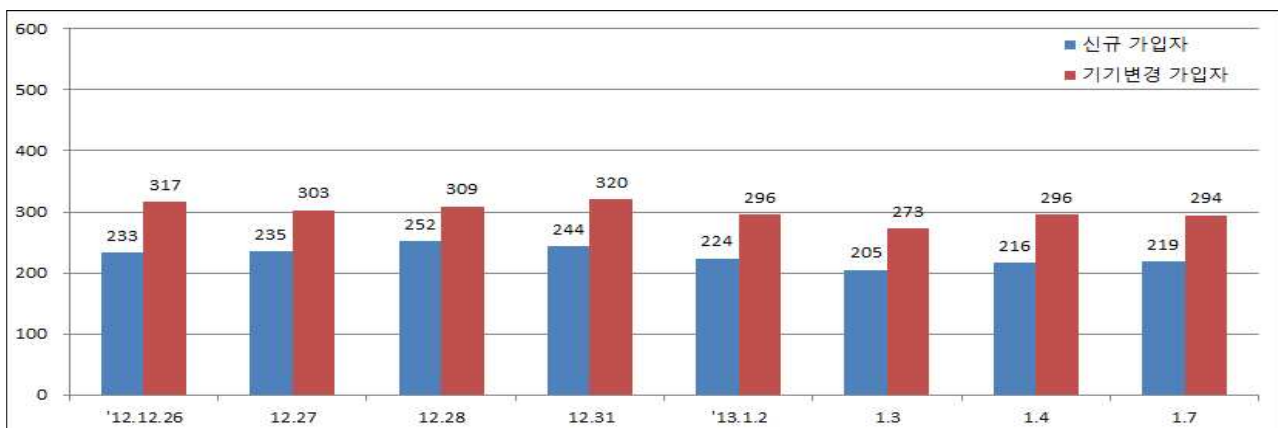
또한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232천원, 신규 일반 가입자는 202천원을 지원하여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의 정도는 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체 평균
신 규	233	235	252	244	224	205	216	219	229
- 번호이동	235	234	260	248	225	211	227	219	232
- 일반(010)	224	236	208	213	210	152	134	223	202
기기변경	317	303	309	320	296	273	296	294	305
보조금 차이	84	68	56	76	72	68	79	76	76

※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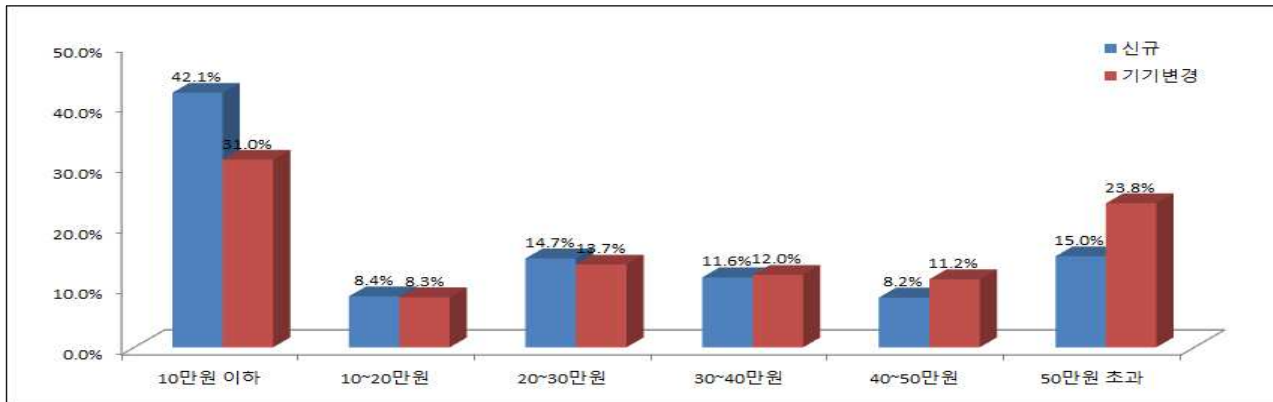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신규와 기기변경이 각각 34.8%와 47%로 신규보다 기기변경 가입자가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형태별 차별도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5,130	1,028	1,793	1,410	1,003	1,834
(점유율)	(42.1)	(8.4)	(14.7)	(11.6)	(8.2)	(15.0)
기기변경	728	194	321	281	264	560
(점유율)	(31.0)	(8.3)	(13.7)	(12.0)	(11.2)	(23.8)



④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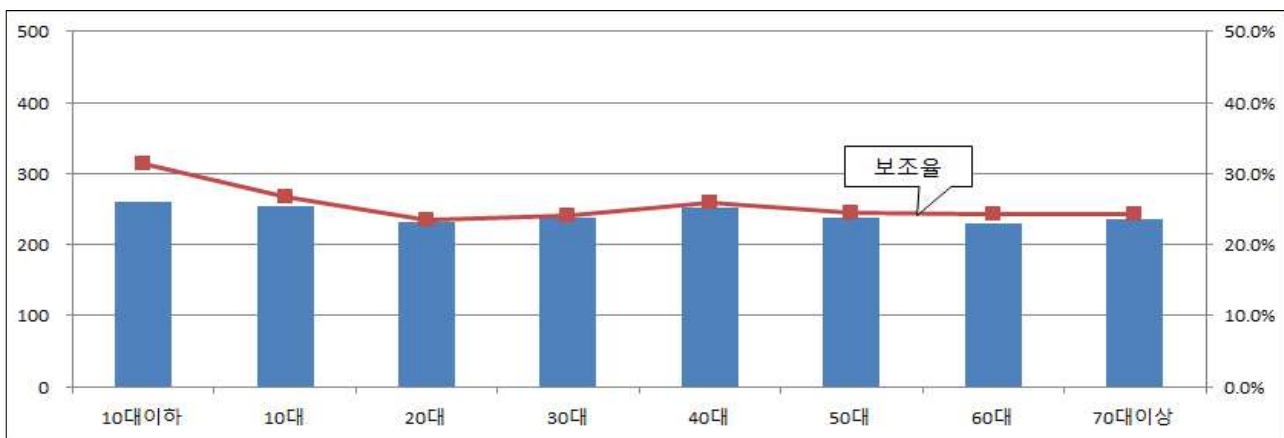
피심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로 살펴보면, 6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230천원(24.2%)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10대 미만 가입자는 260천원(31.3%)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232 ~ 254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831	950	990	984	972	968	953	971
보조금	260	254	232	237	252	237	230	235
보조율	31.3%	26.7%	23.4%	24.1%	25.9%	24.5%	24.2%	24.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⑤ 동일기종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4개 LTE 단말기 기종⁷⁾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는 시기와 가입형태에 따라 보조금 수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차별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일 날짜의 동일기종 간에는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일부 가입자 간 차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주요 LTE 단말기에 대한 일별 보조금 추이를 보면, 베가R3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말기는 평균 보조금을 27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었으며, 일별 보조금 지급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신 기종이나 출시된 지 오래된 기종 간 보조금 지급수준이 비슷하여 신구 모델 간 차별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말기 기종별 일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팻네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SHV-E210L	갤럭시 S3 16G	252	244	203	245	220	195	226	205
SHV-E250L	갤럭시 노트2 32G	213	181	225	219	190	163	182	249
LG-F180L	옵티머스 G	222	205	244	249	219	233	251	247
IM-A850L	베가 R3	280	261	258	265	273	253	257	243

※ 기종별 보조금 금액은 일별 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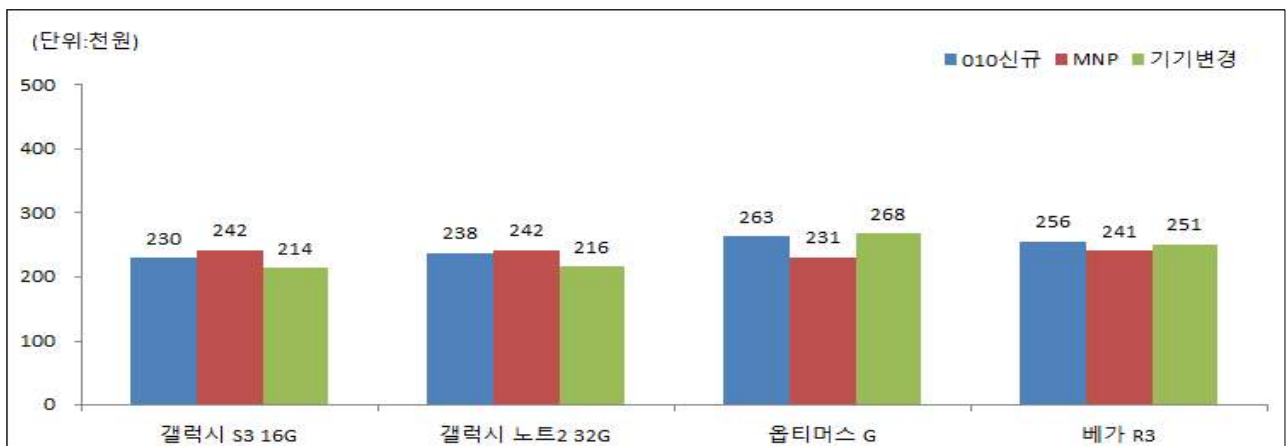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피싱인의 경우 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 보조금 지급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과 신규 일반(010) 간 지급수준이 크지 않아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수준은 차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7) LGU+의 경우 아이폰5를 판매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타사는 주요 5개 기종을 분석)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신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10L	갤럭시S3	961	230	242	214
SHV-E250L	갤럭시노트2	1,089	238	242	217
LG-F180L	옵티머스G	1,000	263	231	268
IM-A850L	베가R3	1,000	256	241	251



다만 동일한 단말기를 구매한 가입자 간에는 보조금 지원의 가입자 간 차별이 심하였는데, 피심인의 주요 단말기 대부분에서 최대 1,045천원 이상에서 최소 0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펫네임	출고가	보조금			
			평균	보조율	최대	최소
SHV-E210L	갤럭시S3	961	222	23.1%	1,045	0
SHV-E250L	갤럭시노트2	1,089	216	19.8%	1,173	0
LG-F180L	옵티머스G	1,000	237	23.7%	1,376	0
IM-A850L	베가R3	1,000	263	26.3%	1,298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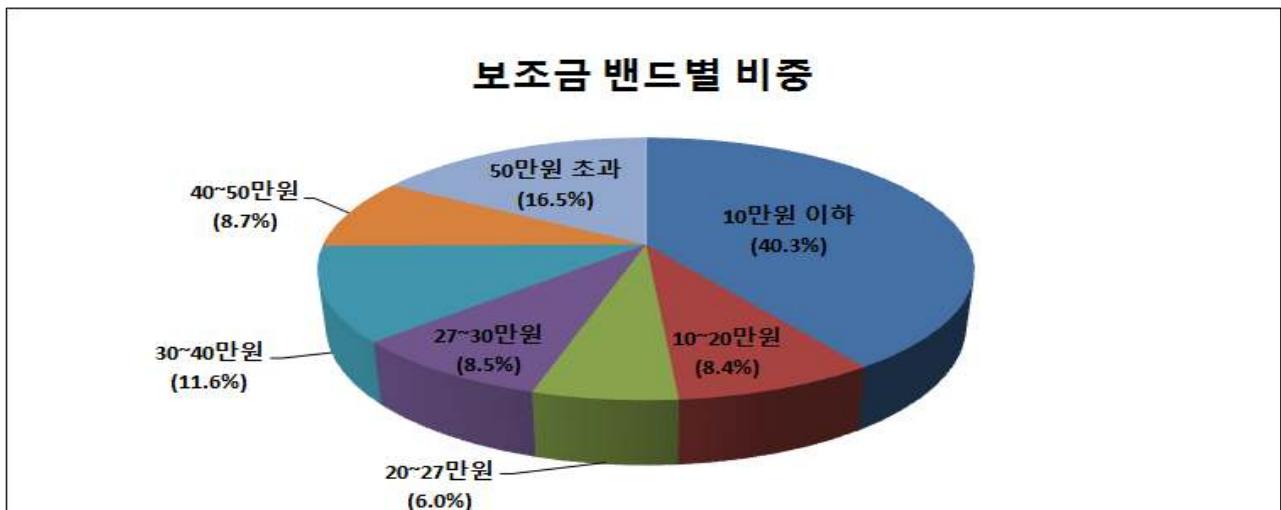
⑥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3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36.8%인데 반해 2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48.7%로 가입자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자 차별이 심각하였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계
가입자	5,858	1,222	874	1,240	1,691	1,267	2,394	14,546
비 중	40.3%	8.4%	6.0%	8.5%	11.6%	8.7%	16.5%	100%



나.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구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된다.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2] 위법성 판단

① 27만원 초과 위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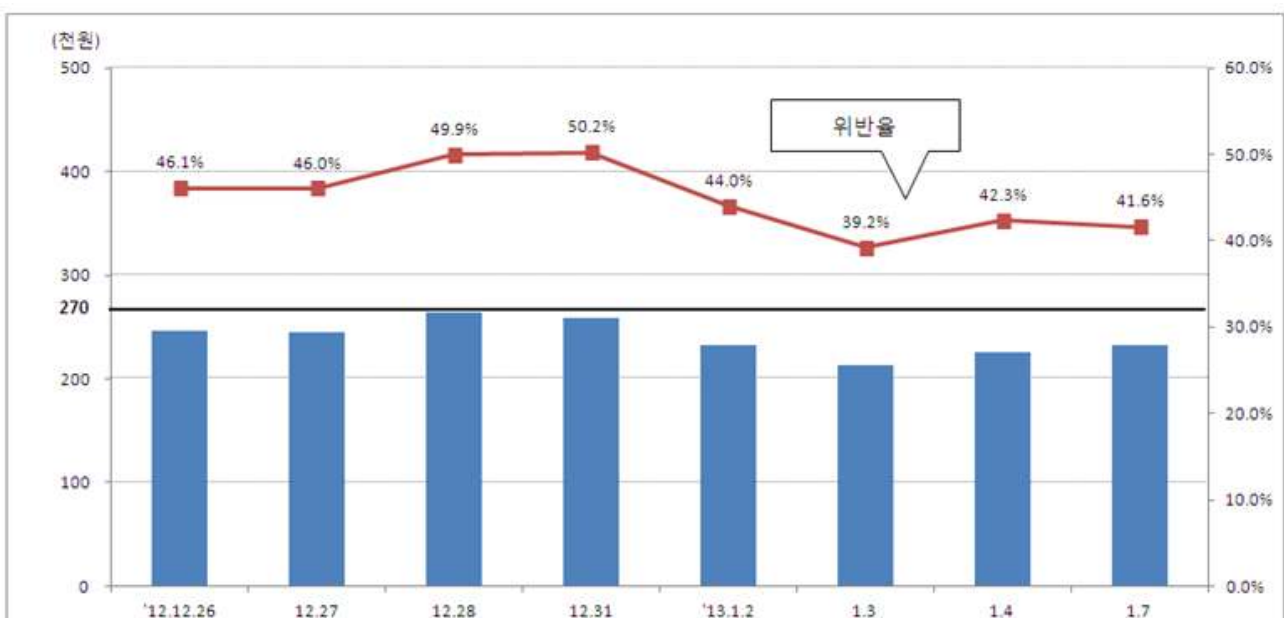
피심인은 전체 조사대상 14,546건 중에서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6,592건으로 위반율은 45.3%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241천원이었다.

피심인의 위반율을 일별로 보면, 2012년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보조금은 259천원이었고, 위반율이 가장 낮은 날은 2013년 1월 3일로 위반율은 39.2%이고 평균 보조금은 213천원이었다.

〈 일별 평균 보조금과 위반율 〉

(단위 : 천원)

구 분	'12.12.26	12.27	12.28	12.31	'13.1.2	1.3	1.4	1.7	전 체
평균보조금	247	245	264	259	232	213	226	233	241
위반율	46.1%	46.0%	49.9%	50.2%	44.0%	39.2%	42.3%	41.6%	45.3



② 가입형태별 위반율

조사대상 자료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신규 010 가입의 위반율은 45.6%이고, 번호이동 위반율은 43.3%이며, 기기변경 위반율은 54.6%로 가입형태별 차별은 낮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위반율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을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평균 출고가	보조금 수준			위 반 율
			평균	최대	최소	
LGU+	전 체	973	242	1,376	0	45.3
	010신규	923	203	1,086	0	45.6
	번호이동	978	232	1,124	0	43.3
	기기변경	978	305	1,376	0	54.6

또한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376천원에서 최소 0원 까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 간 차별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③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43.8~49.6%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10대 이하 가입자에 대한 위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10대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 체
평균 보조금	260	254	232	237	252	237	230	235	242
위 반 율	49.6%	45.3%	43.8%	44.2%	47.9%	46.3%	46.1%	44.2%	45.3%

④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 중 제조사 단말기별로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그 중 주요 단말기를 분석해 보면, 갤럭시 S3 LTE의 위반율은 41.9%, 옵티머스G의 위반율은 42.9%, 베가R3 위반율은 51.9%로 대부분의 주요 단말기에서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

구 분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 반 율
갤럭시S3 16G	961	222	3,284	1,375	41.9
갤럭시노트 232G	1,089	216	2,178	611	28.1
옵티머스G	1,000	237	2,256	967	42.9
베가R3	1,000	263	2,673	1,387	51.9

⑤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6,592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⁸⁾을 살펴보면, 30~40만원대가 전체 대비 25.7%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36.3%로 높은 분포율을 보여주고 있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1,240	1,691	1,267	1,417	421	254	119	134	49	6,592
분 포 율	18.8%	25.7%	19.2%	21.5%	6.4%	3.9%	1.8%	2.0%	0.7%	100%

8)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라.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심인 의견

피심인은 지난 한해 동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및 이를 바탕으로 한 LTE 경쟁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법성 평가와 제재 수준 결정시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12.12.24 의결 당시에 차후 위반행위 재발 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제재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7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3조에 의거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에 의거한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 및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과징금 부과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6] 1호 나목),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350억7천만원이다.

〈 ② 기준 과징금 :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12.12.24일 제재 직후 위반행위가 재발하였지만, 타 사업자에 비해 위반율 및 위반일수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성 약함”으로 판단하되, 부과기준율은 지난 ‘12.12.24일 제재 당시 적용했던 0.35% 보다 높은 0.7%를 적용한다.

〈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 범위 〉

(단위 : 억원)

사업자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		
		중대성 약함 (부과기준율 1% 미만)	중대 (부과기준율 1~2%)	매우 중대 (부과기준율 2~3%)
LGU+	671	6.7 미만	6.7 ~ 13.4	13.4 ~ 20.1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4억7천만원이다.

나. 과징금의 결정

이상의 기준 과징금에 대해 영업 행태, 조사협조 여부 및 시정명령 이행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사유를 적용한다.

필수적 가중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10.9월, ‘11.9월, 12.12월 총 3회 부과 받았으므로 기준 과징금의 20%를 가산하고, 추가적 가중 또는 감경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최종 과징금을 5억6천만원으로 결정한다.

6.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3. 14.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계 철 (인)
	부위원장	김 충 식 (인)
	위 원	홍 성 규 (인)
	위 원	김 대 희 (인)
	위 원	양 문 석 (인)